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3. 17(목)	
		작 성 · 문 의	규제조정실 규제총괄과 과장 손동균 / 서기관 이덕희 (Tel. 044-200-2397)
<b>엠바고</b>	'16.3.16(수) 13시부터 사용가능 (3.17 조간부터 보도)		

- '원칙 폐지', '사후규제', '민간주도'로 규제 패러다임 혁신
- "규제 때문에" 이야기 안 나오도록 신산업 규제 근원적 개선
- 주요 경제활동 규제 일시에 한시적으로 개선, 경제활성화 지원
- 10인 이하 사업체 신설규제 유예 등 중소기업 부담 경감
- 법령에 없는 주민동의 요구 등 소극행태 방지 제도화

-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 확정 -

- 정부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'실천과 성과중심의 2016년 규제정비 종합계획'을 확정하였다.
  - 국무조정실(국무조정실장 : 이석준)은 지난 1월부터 주요 경제단체 및 규제개혁 민간전문가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금년도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,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.
-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은 ① '원칙 폐지' 네거티브 방식 규제개혁 ② '사전 허용, 사후 규제' 본격 도입 ③ '官'이 아닌 '民'이 결정하는 시스템 확립 등 규제개혁 패러다임 전면 혁신을 토대로 3대 전략 10대 과제를 선정,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.

【 2016년 규제개혁 추진개요 】

목 표

경제 재도약을 위한 실천과 성과중심 규제혁신

기본 원칙

- ◆ 미래성장동력 확충 위한 신산업 창발 적극 지원
- ◆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 저해 기존규제 철폐

규제패러다임 혁신

- ① '원칙 폐지' 네거티브 방식 규제개혁
- ② 사전 허용, 사후 규제
- ③ '官'이 아닌 '民'이 결정

3대 전략 10대 과제

① 신산업 분야  
네거티브  
우선 적용

- ❖ 민간주도 신산업 규제혁신 시스템 확립
- ❖ 5+3 신산업 분야 생태계 활성화 규제혁신
- ❖ 신산업 네거티브 패러다임 전환 제도화

② 신속한 경제  
활성화 지원

- ❖ 한시적 규제완화·유예 조치 단행
- ❖ 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 3대 프로젝트 시행  
\* 규제 차등적용, 공공조달 진입장벽 해소, 행정부담 비용 경감
- ❖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

③ 규제개혁 효과  
조속 현장 정착

- ❖ 인허가·협의 간주제 확대 및 신고제 일제 정비
- ❖ 공직자 소극행태 근절
- ❖ 전국규제지도 확대·보완 및 지방조례 점검
- ❖ 지역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정부 규제개선

□ '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	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패러다임 우선 적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 국조실에 민간전문가만으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산업 규제를 '원칙 폐지개선, 예외 소명'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혁파</li> <li>☞ 국제수준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규제만 존치하도록 신산업 규제 재설계 (규제최소성의 원칙)</li> </ul>

□ 빠르게 변하는 기술속도에 신속히 대응하고,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위해 신제품과 신서비스는 일단 시장에 출시토록 하고 사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규제개혁의 틀이 본격 전환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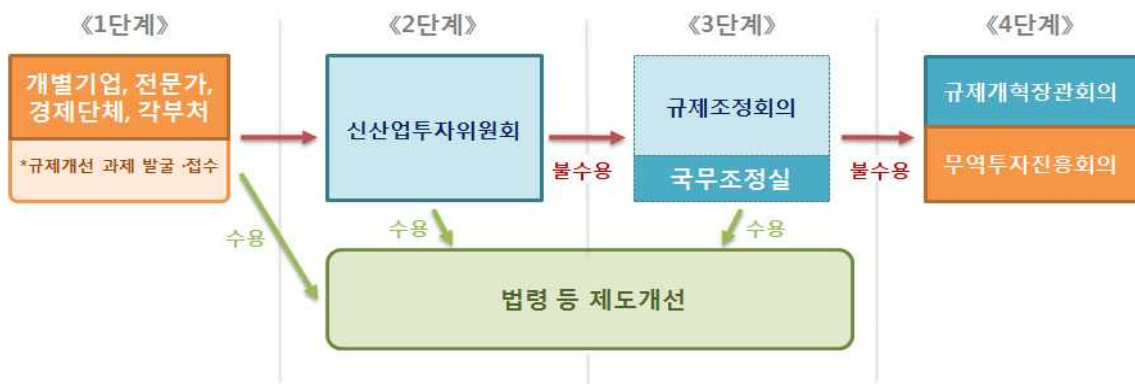
○ 이를 위해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아니라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해결하는 민간주관 '신산업 투자위원회\*'를 국무조정실에 구성, 생명·안전분야를 제외한 규제는 폐지와 개선을 원칙으로 운영한다.

\*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, 각계 추천을 통해 5개 분과(11개 소위) 60여명 인력 Pool 구축 추진

- 민간위원회에서 부처가 불수용한 과제는 규제조정회의\*에서 소명을 통해 추가 검토를 실시하고, 조정회의 이후 최종 불수용 과제는 규제개혁장관회의(또는 무역투자진흥회의)에 보고하여 논의한다.

\* 국무조정실장 주재, 관계부처 차관 참석(규제개혁장관회의 운영규정, 대통령 훈령)

### < 신산업 규제 혁신 시스템 >



- 이와 함께 우선적으로 드론, 사물인터넷 등 유망 신산업 8대 분야\*를 선정하여, 각 산업별 생태계를 고려한 생애주기 전단계 현장 규제애로를 전수조사 하고 해외사례와 비교 하여, 국제수준에서 규제가 최소화 되도록 산업별 규제를 재설계한다.

\* △무인기 △사물인터넷(IoT) △스마트 자동차 △바이오 신약 △3D 프린팅 (국조실)  
△빅데이터 △클라우드 △O2O (국조실-미래부 등 관계부처 협업)

- 신산업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, 신속 시장출시 지원제도\* 분기별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유도한다.

\* 산업융합촉진법(적합성 인증), ICT특별법(임시허가) 등

- 신산업 분야의 기존규제 정비 및 규제신설의 경우에도 ‘원칙 허용, 예외금지’의 네거티브 입법방식을 원칙으로 적용할 계획이다.

## 신속한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존규제 혁신

2

☞ 경제효과가 큰 현장규제들을 한번에 일괄해서 일정기간 완화 또는 유예하는 ‘한시적 규제완화유예’ 조치 상반기중 실시

☞ ‘**중소 경영부담경감 3대\*** 프로젝트’, ‘**환경규제 합리화**’ 추진

\* △공공조달시장 진입해소 △규제차등적용 △행정부담 비용 경감

- 경기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,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선정, 한시적으로 i)규제완화 ii)집행중단 iii)시행연기를 하는 ‘한시적 규제완화·유예’를 전격적으로 도입·추진한다.

※ '09.5월,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‘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’ 발표

- 주요 사례 : 붙임 1 참조

- 입지·환경·투자·고용·각종 부담금 등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한 규제와 함께 조선·해운·철강·석유화학·건설 등 5대 주력산업 분야의 파급력 큰 과제를 중심으로 즉시조치 가능 과제를 집중 발굴, 시행령 일괄개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.

□ 이와함께 경기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의 기업경영 부담경감을 위한 3대 프로젝트를 기획, 중점적으로 추진한다.

① 공공조달 시장 진입 초기 중소·벤처기업들에 있어 그간 커다란 장벽으로 존재해 왔던 입찰제한 관련 규제들을 대폭 개선한다.

\* 공공기관, 지자체, 교육기관 등의 조달은 각 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계약체결 (전체 조달시장의 70%, 77.6조 차지, '14 중기옴부즈만)

○ 공공조달 혁신 TF\*를 구성하여 과도한 실적, 무리한 납품검사 요구 등 공공조달 관련 제도적 미비사항 개선과 지자체·지방공사의 불합리한 조달계약규정 등을 중심으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.

\* 국조실, 기재부, 행자부, 조달청, 중기청, 중기옴부즈만 등

○ 이를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, 중소기업청, 중기옴부즈만,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 규제애로를 접수할 예정이다.

※ 현장애로 사례 : 붙임 2 참조

② 대기업에 비해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에 역진적인 기존 규제를 발굴·개선하고,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용유예·경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차등적용제가 본격 도입, 시행된다.

\* 현재 중소기업규제 총 8,291건 중 규제차등적용은 137건(1.7%)에 불과(중기연)

< 신설규제 적용유예·경감(안) >

▶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 대상 기업활동규제(생명·안전은 제외)를 최소 3년간 원칙적으로 적용 면제, 3년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 유지

▶ 상시근로자 50명 미만(또는 연평균 매출액 120억원 미만) 사업체에게는 규제부담 완화 방안\* 강구

\* 전부면제(기본방안), 일부·일시 면제, 기준·절차·시기·주기·차등화 등

※ (참고 : 영국사례) '14.3월 이전에는 1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창업자에게 규제 면제, 이후 Small and Micro Business Assessment(SMBA)를 통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신규규제 면제 또는 감면

③ 정부·공공기관의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보고로 발생하는 기업의 행정부담 비용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.

\* 행정비용 부담 평균(중소기업 : 5,897만원 / 대기업 : 5억 6,384만원)

○ 현장 기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각종 교육실적 보고 등 불필요한 보고는 폐지하고, 중복보고는 간소·단일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.

□ 현장 기업들의 개선요구가 큰 화학분야에 대해서도 화학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평법·화관법 시행 이후 불합리한 현장규제 애로를 중점 발굴·혁파한다.

### 규제개혁 효과의 조속한 현장 정착

3

☞ 인허가 처리기간이 지나면 인허가된 것으로 간주하고(인허가 간주제), 인허가처럼 운영되는 '무늬만' 신고제는 정비

☞ 법령에 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등 공직자 소극행태도 시스템적으로 차단, 전국규제지도 확대를 통한 지자체간 경쟁 촉진

□ 현재 개별법령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한 인허가·협의 간주제를 기업투자 관련성이 크고,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인허가 중심으로 확대한다.

▶ (인허가 간주제) 인허가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인허가 여부나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경과되면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

\* 외국인투자촉진법, 중소기업창업지원법, 산집법 등 11개 법령에 기도입

▶ (협의 간주제) 복합인허가 관계기관 협의시 관계기관이 협의기간내 미응답 시, 협의된 것으로 간주

\*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,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일부 시행

○ 이와 함께 신고제를 인허가와 동일하게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행태 근절을 위해 전체 신고규정 1,200여건 중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처리 기간 명기 등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 여지를 차단한다.

- 한편,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시 법령에 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등 보이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혁파하고, 이에 대한 현장이행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.
-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기준을 파면까지 강화하고,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제\*를 전 중앙부처로 확대 실시한다.

\* 업무처리 과정상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사전해결, 감사 걱정 없이 적극행정 유도

□ 지방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된다.

-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분석을 지난해 11개 분야에서 도시계획·산업지원정책·기부채납·지방세정 등 민원다발성 항목 중심으로 4개 분야 추가, 총 15개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환경종합지도로 개편한다.
- 또한 지난해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전면정비에 이어 올해는 지역투자 저해 규제, 주민생활 밀착형 규제를 중심으로 지역 현장과 괴리된 중앙정부 규제를 발굴, 중점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정부는 금일 확정된 '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'제도개선 → 현장집행 → 애로해결 → 현장체감' 순 과정이 확실하게 완료될 때까지 추적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.

- 이를 위해 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\*를 격월로 개최하고, 중앙-지자체 합동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규제개선 내용이 일선 지자체 현장까지 신속히 전파·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.

\* '15.7월(경기 안산·반월), '15.10월(광주), '15.12월(부산), '16.2월(대전) 총 4회 개최

- 주요 경제단체·분야별 읍부즈만·규제학회 등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현장애로 청취와 피드백, 다수부처 관련 과제 수행을 위한 협업 T/F 운영 등 '협업'과 '현장중심'의 규제혁신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**① 입지·증축 제한 완화****(‘09년 사례)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설 허용(2년)**

- (기존) 녹지지역 등 보전지역은 보전목적으로 공장증축 등이 제한되고 20% 건폐율 적용됨
- (개선) 기존공장에 한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%를 적용함으로써 부지내 증축 허용

**(‘09년 사례)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비율 유예(2년)**

- (기존)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시행하는 경우 의무임대비율 설정
  - \* 수도권지역은 10%, 수도권이외의 지역은 5%
- (개선) 의무임대비율 2년간 유예

**(‘09년 사례)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완화(2년)**

- (기존)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%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,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을 수 있음
- (개선) 일반주거지역내에서도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건설 의무를 면제

**② 창업·투자 요건 완화****(‘09년 사례) 여행업 자본금 기준 완화(2년)**

- (기존) 여행업 등록시 일반여행업 3.5억원, 국외여행업 1억원, 국내여행업 5천만원 자본금 필요
- (개선) 여행업 등록시 자본금요건 완화

**③ 부담금 한시 감면****(‘09년 사례) 창업제조업에 대한 한시적 부담금 면제시한 연장(2년)**

- (기존) '10.8.3까지 제조업 중기 창업자에게 사업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11개 부담금\*을 면제
  - \*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,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초지조성비, 수질배출 부담금, 대기배출부담금, 폐기물부담금, 전력산업기반부담금, 물이용 부담금(한강 등 4종)
- (개선)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을 제외한 10개 부담금의 면제시한을 2년간 추가 연장

**(‘09년 사례) 경제자유구역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(2년)**

- 경제자유구역내 시설 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 50% 감면혜택을 한시적으로 '09.7.1~'11.6.30까지 적용(현재 '08.12.31 만료)



#### ④ 영업활동 제한 완화

##### (‘09년 사례)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(2년)

- (기존)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을 5인이상(벤처기업은 2인이상),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0인이상 확보하여야 함
  - \*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세, 연구전담요원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 적용
- (개선)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요건을 5인→3인이상으로 2년간 완화

##### (‘09년 사례) 수의계약 요건 제한 완화(2년)

- (기존) 공개경쟁입찰에서 유찰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은 1인 건적만으로 가능한 반면, 지방계약은 2인 이상 건적이 필요
- (개선) 지방계약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1인 건적만으로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

#### ⑤ 중소기업 부담 완화

##### (‘09년 사례) 지방 창업 중소·벤처기업 법인세 등 감면기간 연장(2년)

- (기존) ‘09. 12. 31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%를 감면
- (개선)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기간을 ‘11년까지 연장

##### (‘09년 사례)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청 자격요건 완화(2년)

- (기존) 상시근로자 15인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산업기능요원 신청 자격 부여
- (개선) 산업기능요원 신청 자격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업체로 완화

① **단순 인쇄물 입찰에 자본금·건물소유·시설규모로 참여 제한**

- △△기술교육대학교는 인쇄물 단가계약 체결시, 입찰 참가자의 건물소유 여부, 시설규모, 자본금, 근로자 수, 국가 또는 공공기관 납품실적 등을 제한
  - \* 건물소유(건물 및 부동산 보유/임차 가능), 시설규모(100m<sup>2</sup> 이상), 자본금(자기자본금 1억원 이상), 근로자수(상시 근로자 10인 이상) 등
- 창업초기·소기업의 입찰 참가 기회조차 박탈하는 결과 초래, 또한, 창업기업이 실적을 쌓아 우수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, 기존업체가 반사 이익을 얻게 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

② **과도한 실적 요구 등 특정기업 밀어주기**

- 기타 공공기관인 G레저(주)는 추정가격 6.7억 상당 단체복(잠바·아웃도어) 구매시, 입찰 참가자격으로 백화점 10곳 이상의 납품 실적 요구
  - \* 국가계약법령의 경우,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작구매시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허용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)
- 국가계약법령은 물품제조실적, 품질 인증 등으로 인한 입찰참가제한 외에 브랜드에 따른 제한 불허하므로 법령 위반
- 또한, 현실적으로 백화점 10곳 이상에 납품되어 지는 브랜드 조건을 만족하는 소기업은 별로 없으므로 균등한 기회 보장되지 않음
- 물품 제작능력을 보유하였음에도 백화점 납품 실적을 충족하기 어려운 기업은 입찰참가 기회 자체 박탈

동 입찰 건은 입찰참가 기업이 한 곳 밖에 없어 결국 유찰됨

### ③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계약운영

- H 공기업 4.3억 규모의 하계작업복 제작구매 입찰시 “최근 2년 이내 단일 건으로 3억 이상의 작업복 납품실적”을 요구하는 “제한 경쟁입찰’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
  - 작업복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”에 해당되며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가 아니나,
  - 「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」 「H 공기업 계약관리규정」 등을 적용하여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한 것은 담당직원의 과도한 규제적용의 문제

### ④ 법령을 위배한 중복제한을 통해 특정업체 수주지원

- B 공단은 ‘내부역량진단 및 컨설팅’ 용역 제안서 평가시, 서울소재 기업으로 한정하며, 유사분야 실적으로 최근 3년간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적을 기준으로 제시
  - 공단은 용역 추진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\*와 달리 입찰 참가자격을 중복적으로 제한\*\*하는 선례를 답습하여 특정업체가 용역을 독점으로 수행하는 결과 초래

\*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(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)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은 참가할 자의 자격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

\*\* 중복제한 내용

1. 참가업체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로 제한
2. 유사분야의 민간 리서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

#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

- 경제 재도약 위한 실천과 성과중심 규제혁신 -

2016. 3.



**국무조정실**

# I. '16년 규제개혁 추진 개요

## 목표

경제 재도약을 위한 실천과 성과중심 규제혁신

## 기본 원칙

- ◆ 미래성장동력 확충 위한 신산업 창발 적극 지원
- ◆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 저해 기존규제 철폐

### 규제패러다임 혁신

- ① '원칙 폐지' 네거티브 방식 규제개혁
- ② 사전 허용, 사후 규제
- ③ '官'이 아닌 '民'이 결정

## 3대 전략 10대 과제

① 신산업 분야  
네거티브  
우선 적용

- ❖ 민간주도 신산업 규제혁신 시스템 확립
- ❖ 5+3 신산업 분야 생태계 활성화 규제혁신
- ❖ 신산업 네거티브 패러다임 전환 제도화

② 신속한 경제  
활성화 지원

- ❖ 한시적 규제완화 · 유예 조치 단행
- ❖ 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 3대 프로젝트 시행  
\* 규제 차등적용, 공공조달 진입장벽 해소, 행정부담 비용 경감
- ❖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

③ 규제개혁 효과  
조속 현장 정착

- ❖ 인허가 · 협의 간주제 확대 및 신고제 일제 정비
- ❖ 공직자 소극행태 근절
- ❖ 전국규제지도 확대 · 보완 및 지방조례 점검
- ❖ 지역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정부 규제개선

## II. 과제별 추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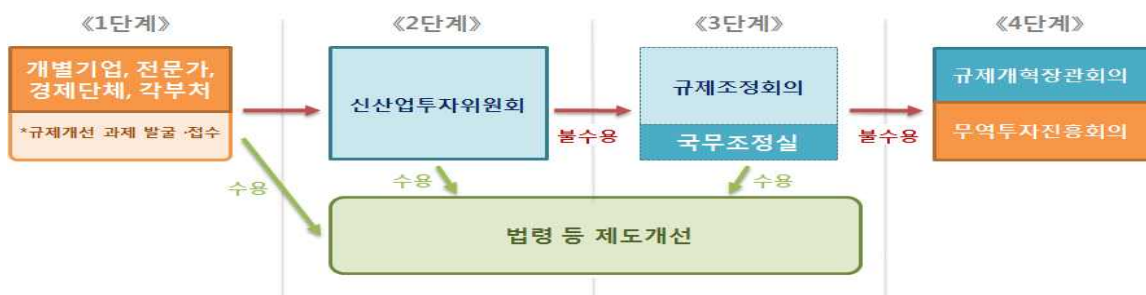
1

###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패러다임 우선 적용

#### 1-1. 민간주도 신산업 규제혁신 시스템 확립

- 민간주관 '신산업\* 투자위원회\*\*' 구성·운영, 개선여부 민간이 결정(3월)
  - \* 산업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된 산업부문 중에서 시장성, 파급효과,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(산업융합촉진법 제2조)
  - \*\*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, 각계 추천을 통해 5개 분과(11개 소위) 60여명 인력 Pool 구축 추진
- 생명·안전분야를 제외하고 상정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·개선, 예외적 소명(네거티브 심사방식)
- 개별 기업, 전문가, 관련 단체 및 각 부처\* 등에서 직접 발굴·접수
  - \* 부처 고유규제가 아니라 부처간 연관규제로 타부처의 개선이 필요한 과제 제출
  - 건의과제 누락 등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 배제, 소관부처는 규제존치 여부에 대해서만 소명
- 신산업 관련 적합성 인증, 신속 시장출시 및 시범사업 적극 활용
  - \* 산업융합촉진법(적합성 인증), ICT특별법(임시허가) 운영상황 분기별 점검 등
- 위원회에서 부처 불수용한 과제는 규제조정회의(국조실장 주재)에서 검토
  - 조정회의에서도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규제개혁장관회의(또는 무역투자진흥회의)에 보고·논의

#### <신산업 규제개혁 업무처리 흐름>



- 19대 미래성장동력 규제개선 방안(국과심, '15.12월) 등 불수용·중장기 검토 과제도 부처 소명, 개선안 도출 (3월)

## 1-2. 5+3 신산업 분야 생태계 활성화 규제혁신

- 우선 5+3\* 신산업 분야 생애주기 쏠단계 규제애로 조사 및 재설계 (6월)
  - \* 5 : △무인기 △사물인터넷(IoT) △스마트 자동차 △바이오 신약 △3D 프린팅 (국조실)
  - 3 : △빅데이터 △클라우드 △O2O (국조실-미래부 등 관계부처 협업)
- 국조실 주관, 전문가 면담,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스타트업 및 선도기업 대상 R&D부터 상용화까지 현장 규제애로 조사, 개선안 마련
  - 국제적 기준으로 '최소한의 규제'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재설계
- 신산업 분야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조사대상 분야 추가

## 1-3. 신산업 네거티브 패러다임 전환 제도화

-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시행령 이하 네거티브 전환 (6월)
  - 투자·일자리 창출 효과 큰 산업부터 우선 시범적용 후 타분야 확산
    - \* 경제단체 건의, 각 부처 자체 발굴 등을 통해 시장진입, 경영활동 규제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화 추진(법제처 주관)
- 신산업 규제 신설·강화시 네거티브 방식 적용 (상시)
  - 법령 재개정 쏠단계에 네거티브 적용 여부 검토 강화
    - \* 규제영향분석 → 규제심사 → 법제심사 3단계

## 2

## 신속한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존규제 혁신

### 2-1. 한시적 규제완화·유예 조치 단행

-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, 한시적으로 i) 규제완화 ii) 집행중단 iii) 시행연기 시행 (6월)
  - \* '09.5월,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'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' 발표, 280건(유예 145건, 항구적 완화 135건)의 규제에 대해 효력 정지 추진
- 입지·환경·투자·고용·각종 부담금 등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한 규제를 심층검토, 개선 추진

- 조선·해운·석유화학·철강·건설 등 5대 핵심 주력산업 분야, 파급효과가 큰 규제개혁 과제도 발굴
- 대형 투자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규제로 발목 잡혀있는 '현장대기형 프로젝트' 발굴·검토

< 과제 예시 : '09년 사례 >

- ▶ (입지) 기존공장에 한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% 적용(2년)
- ▶ (과징금) 해상운송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, 5회 이내 분할 납부 허용(2년)

□ 즉시 조치 가능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시행령 일괄 개정, 영구적 개선 과제도 동시에 검토·개선

- 대한상의·전경련 등 경제단체, 정부부처, 지자체로부터 발굴

## 2-2. 중소기업 부담경감 3대 프로젝트 시행

### 1] 중소기업 규제 차등적용을 통해 규제의 역진성 해소

※ 현재 중소기업규제 총 8,291건 중 규제차등적용은 137건(1.7%)에 불과(중기연)

- (신설규제)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 대상 기업활동규제(생명·안전은 제외)를 최소 3년간 원칙적으로 적용 면제, 3년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 유지 (3월)

- 상시근로자 50명 미만(또는 연평균 매출액 120억원 미만) 사업체에게는 규제부담 완화 방안\* 강구

\* 전부면제(기본방안), 일부·일시 면제, 기준·절차·시기·주기·차등화 등

※ (참고 : 영국사례) '14.3월 이전에는 1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창업자에게 규제 면제, 이후 Small and Micro Business Assessment(SMBA)를 통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신규규제 면제 또는 감면

- (기존규제) 6대 핵심분야\* 선정, 현장건의 취합, 실태조사 등을 통해 차등규제 필요과제 발굴·개선\*\* (6월)

\* 국토해양, 식품·의약품, 고용·인력, 환경, 소방, 수출·판로

\*\* 중소기업청, 중소기업음부즈만, 중소기업연구원, 중기중앙회 등과 협업



## ② 공공조달시장 중소기업 진입장벽 해소 (7월)

- 공공부문(수요기관) 직접조달\*에 있어 입찰제한, 실적요구 등 신산업 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규제 개선
  - \* 공공기관, 지자체, 교육기관 등의 조달은 각 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계약체결 (전체 조달시장의 70%, 77.6조 차지, '14 중기옴부즈만)
- 공공조달 규제개혁 TF 구성(기재·행자부, 조달·중기청, 중기옴부즈만 등), 기업애로 수요조사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선안 마련

## ③ 중소기업 행정부담 비용 경감 (하반기)

- 각종 교육실적 보고, 산업안전 관련 각종 보고 등 행정편의주의적 관행 과감히 개선, 불필요한 보고는 폐지하고 중복보고는 간소·단일화
  - \* 행정비용 부담 평균(중소기업 : 5,897만원 / 대기업 : 5억 6,384만원)
- 기업 현장조사 및 관계자 심층인터뷰 등을 거쳐 경감대책 수립

## 2-3.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

- 화학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 부담 합리화 및 중복 해소 (6월)
  - \* 국조실 주관하 환경부·산업부·고용부·중기청 등 관계부처 TF 구성
- 시설기준 개선 등 화관법·화평법 현장 규제애로 신속 해결
- 화학 규제 외국 법령 비교 등 관리체계 개선 추진

## 3

## 규제개혁 효과의 조속한 현장 정착

### 3-1. 인허가협의 간주제 확대 및 신고제 일제정비

- 신속한 인허가와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별법령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한 인허가·협의간주제 대폭 확대 (4월)
  - 기업투자 관련성이 크고, 신속심사 필요 인허가 중심으로 확대

- ▶ (인허가 간주제) 인허가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인허가 여부나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경과되면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
  - \* 외국인투자촉진법, 중소기업창업지원법, 산집법 등 11개 법령에 기도입
- ▶ (협의 간주제) 복합인허가 관계기관 협의시 관계기관이 협의기간내 미응답 시, 협의된 것으로 간주
  - \*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,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일부 시행

- 신고제를 행정청의 심층적 판단을 요하는 인허가와 같이 편법 운영하는 행태 근절 (5월, 10월)
  - 전체 신고규정 1,200여건 중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처리기간 명기 등 입법기준 마련,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 소지 차단

### 3-2. 공직자 소극행태 근절

- '16년도 「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」지자체 시달 등을 통해 법령에 없는 주민동의서 등 요구 개선 (3월)

< 사례 예시 >

- ▶ 토지형질변경 허가 심의시 주민동의서 관행적 첨부 요구(전북 ○○시)
- ▶ 골재파쇄 공장 건립 개발행위 허가시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 요구(충북 ○○군)
- ▶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설치 개발행위 허가시 주민동의서 첨부 요구(충북 ○○군)

- 부작위·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비위의 별도 유형으로 명시하고 파면까지 가능토록 징계기준 강화 (6월)
  - \* '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' 개정
- 업무처리 과정상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사전해결을 통해 감사 걱정 없이 적극행정을 가능케하는 사전컨설팅 감사제 전 중앙부처 확대 실시 (3월)
  - \* '지자체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'(국무총리 훈령) 제정

### 3-3. 전국규제지도 확대·보완 및 지방조례 점검

- 기업하기 좋은 지역 대폭 확산을 위한 전국규제지도 확대·보완
  - 기부채납 등 민원다발 항목을 포함하여 경제활동 친화성 분석분야 확대

- ▶ ('14년) 공장설립, 일반음식점, 창업지원, 기업유치지원 등 6개 분야
- ▶ ('15년) 환경규제, 유통물류, 부담금 등 5개 분야 추가, 총 11개 분야
- ▶ ('16년) 도시계획, 기부채납, 지방세정, 산업지원정책 등 4개 추가, 총 15개 분야로 확대

□ '15년 추진한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6,440개 3월말까지 정비 완료

\* ('15.9월)3,589개(55.7%)→(12월)5,208개(80.9%)→('16.1월)5,376개(83.5%)→(2월)5,684개(88.3%)

○ 개정된 자치법규 재점검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사전차단방안\* 시행

\* 주무부처·국민의 자치법규 입법예고안 사전검토제 실시 등

### 3-4. 지역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정부 규제개선

□ 지역투자 저해 규제, 주민생활 밀착형 규제를 중심으로 현장과 괴리된 중앙정부 규제 발굴(지자체 건의 등), 중점개선 추진(하반기)

○ 지자체 건의에 대해 소관 부처 1차 검토 후, 부처 검토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큰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

< 중점 추진과제 선정기준 >

① 다수 지자체 건의 과제 ②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과제 ③ 타 지자체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 ④ 현장여건에 맞지 않아 민원이 많은 과제 등 7개 기준

○ 행자부와 협업,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대책 마련 후 이행 추진

## Ⅲ. 철저한 사후점검 및 민관 협업 강화

□ '제도개선 → 현장집행 → 애로해결' 전 과정이 확실하게 완료되고,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 까지 추적 관리

○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(총리주재) 격월 개최 등 이행 점검·관리 강화

○ 중앙-지자체 합동점검단 구성, 지방규제 개선 및 소극행태 점검 강화

○ 부처별 이행성과 중간점검(상반기), 규제개혁 종합평가(하반기) 실시

\* 선제적 경기대응에 필수적 사안은 현장점검 등 특별관리 병행

□ 주요 경제단체(대한상의·중기중앙회·전경련 등), 분야별 읍부즈만(중소기업, 산업융합 등), 규제학회 등 민관합동 협업시스템 구축, 적극 활용